

# 2018년 국제기술교류회 운영기관 신규지정 공고

신산업 중심의 글로벌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의 개방형 혁신지원을 위한 국제기술교류회 운영기관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I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기술교류 기회 제공 및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국제기술교류회 선정 및 운영

**국제기술교류회** : 국제협력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협·단체가 자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혁신주체 간 매개 역할 수행, 국내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에 적합한 해외 우수 산□학□연 매칭을 통해 R&D 협력 및 과제 도출

### 2. 사업내용

[국제기술교류회 주요 기능]

활동구분	상세내용
교류협력	· 파트너□협력 주제 탐색 등 협력기회 제공
국제공동 R&D	· 양자□다자간 공동펀딩 R&D 과제 발굴
글로벌 공조 체계	· 국제표준, 기술규제 관련 등 협력 전략 구축

\* 협약체결 시 각 교류회별로 정량적 지원목표 부여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35백만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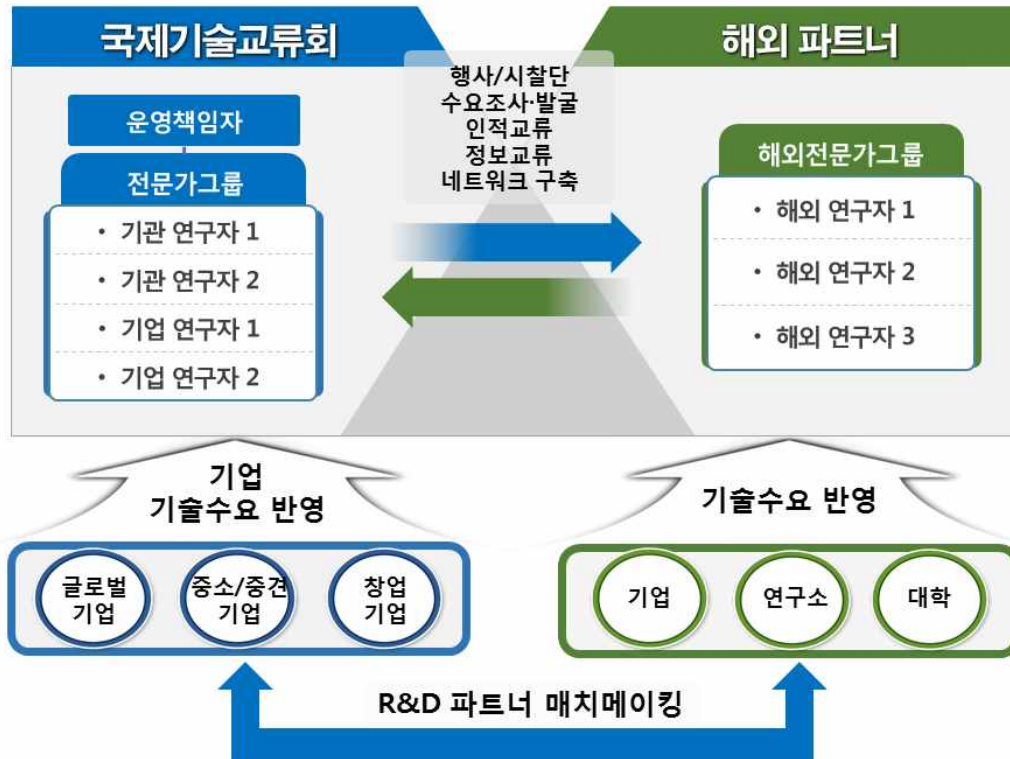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 1. 지원 내용

- 국제기술교류를 위한 제반 활동 지원 : 국제기술교류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해외기관과의 국제공동 포럼/컨퍼런스/세미나 등의 국내외 기술교류회(국내기업-해외기관 B2B 미팅 등 기술협력 매치메이킹 행사 필수)

\* 운영기관은 수행하고자 하는 국제기술교류 활동에 대해 명확히 제시

< 국제기술교류회 구성 >



### 2. 신청 자격

-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협회 및 단체

유형	내용
협회·단체	해당 산업분야에서 국제협력 역량을 보유하여 국제 민간기술교류를 지원할수 있는 역량 및 체계를 보유한 협회 및 단체로 「민법 제 32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

○ 대상국가 :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양자·다자) 대상국가

유 형	대 상 국 가
양자 공동펀딩 참여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독일, 체코, 영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다자 공동펀딩 (유로스타, 유레카 Horizon 2020, M-ERANET) 참여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 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 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 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 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캐나다, 남아공, 모나코, 몬테네그로,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우크라 이나, 브라질, 헝가리, 대만, 터키, 핀란드

○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분야  
중심으로 지원

\* 전기·자율주행차, IoT,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 3. 교류회 운영기간 : 18.5.1~18.12.31

### 4. 2018년도 지원 조건

- 총 지원예산 : 7천만원 내외
- 선정기관 : 2개 기관
- 지원기간 : 8개월 ('18.5월~18.12월)

### III

## 지정방법 및 평가방법

### 1. 지정방법 및 절차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① 공고	<국제기술교류회 운영기관 선정 공고>	'18.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			
② 신청접수	<신청 서류 제출> • (서류제출) '18.2.23~3.30	(서류) '18.3.30 마감	운영기관 →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			
③ 적합성 검토	<사전 검토>	'18.4월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			
④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기관의 역량 검증	'18.4월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			
⑤ 발표평가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18.4월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평가위원회
↓			
⑥ 지원기관 최종 선정	<교류회 선정 및 지정>	'18.4월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			
⑦ 협약 체결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출연금 지급>	'18.4월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 수행기관
↓			
⑧ 사업수행	<수행기관 과제 수행>	'18.5월 ~ 12월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평가방법 및 우대사항

### ○ 적합성 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 발표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안내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국제기술교류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5대 신산업분야, R&D 과제 도출 가능성 등)
	교류회 활동의 타당성 및 우수성	• B2B 미팅 등 참여주체 간 실질적 교류에 대한 추진 계획의 타당성 및 우수성
	사업비의 효율성*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추진역량 (30점)	추진주체의 역량	• 해당산업분야 전문성과 사업역량 보유 정도 • 해당분야 민간 중심의 국제기술교류 협력 경험 보유정도
성과 및 기대효과 (30점)	교류회 성과 및 기대효과	• 국제기술교류회로 창출된 성과(R&D 과제 도출 등) • 행사 종료 이후 성과 관리 및 자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계획 정도

\* 사업비 사용계획은 준용규정을 따르되, 교류회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예산의 산정은 불가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접수전후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함)

### ○ 우대 가점 사항

- 교류회(B2B 1:1 미팅 행사 및 세미나 등)를 통한 R&D과제 접수 사례가 있는 경우 가점 부여(3점)

\* 교류회를 통한 과제 접수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예:과제 접수증 등)

## IV

## 신청 방법

- 신청서 교부 :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홈페이지(<http://www.fitn.or.kr>)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기타 부속서류(필요시)
- 신청서 제출 : 이메일 접수(접수 마감일(3월 30일(금)) 18시 접수 분에 한함)
  -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접수 반려
- 접수기간 : 2018년 3월 19일(월) ~ 3월 30일(금) 18시(이메일 접수 기준)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이메일 : [smchoi@fitn.or.kr](mailto:smchoi@fitn.or.kr)
    - 우편: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전소원 사무관  
([espoir@korea.kr](mailto:espoir@korea.kr), 044-203-4505)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전략기획팀 최수명 팀장  
([smchoi@fitn.or.kr](mailto:smchoi@fitn.or.kr), 02-6009-8245)

## V

##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 산업기술혁신사업(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6.추진체계-바.기술교류회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규정참고 : 홈페이지 참조
  - \* 홈페이지(<http://www.fitn.or.kr>) → 주요사업 → 규정 및 서식

## VI

## 유의사항

- 지정의 취소
  - 진도점검을 통해 과제수행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실적 보고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선정·협약취소
  - 수행기관,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신청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